

# 2024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
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8일

## 광 주 광 역 시 장

### 1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700억원(은행 협약자금)
- 취급은행 : 광주, 부산, 수협중앙회, 새마을금고, 신한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KB국민, KDB산업, NH농협, SC제일 등 13개 은행
- 지원조건
  - 대출기간 : 2년거치 일시상환
  - 대출금리 :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
- 지원한도액 : 업체당 3억원 이내
  - ※ 명품강소기업,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업체당 5억원 이내
- 이차보전율 : (기본) 2% ~ (최대) 4%
  - ※ 명품강소기업,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1% 추가지원(항목별 중복불가)
  - ※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기업 : 1% 추가지원
- 보증료지원 : 최대 1.2%      ※ 동행지원 협약자금 지원대상 한정

### 2 지원대상

#### □ 일반 경영안정자금

-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  -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-34)

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[붙임 1] 및 지식서비스업체 [붙임 2]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 
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 
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

#### □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

-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
-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
- ※ 광주광역시-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,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

#### □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 특별자금

-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
-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

#### □ 제외대상
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 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 전업을 30% 미만 업체  
(손익계산서상 제조(제품)매출,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% 이상이어야 함)
  -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
  - 단순보관 유통·도·소매업체(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)
  - 최근 5년간 정부·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
  -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
  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    - ▶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
    - ▶ 신청·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 
(특수관계인 간 거래·계약, 상호·대표자·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)
    - ▶ 기타 부당 사용
    - ▶ 신청·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    - ▶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- ▶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

## 4 지원통보

- 통보내용 :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
- 통보기관 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→ 시, 지원대상업체, 협약은행
- 대출취급기한 :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연장 불가
  - ※ '24. 10. 1. 이후 융자지원 확정된 업체인 경우 대출 취급기한 : '24. 12. 31.
  - ※ 미사용업체의 경우 차년도 신청 불가

## 5 기타사항

- 본 공고 이외 사항은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기타 문의사항 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(062-960-2662)

**붙임1****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**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도로화물 운송업	493
○해상 운송업	501
○항공 운송업	51
○화물 취급업	5294
○보관 및 창고업	5210
○물류터미널 운영업	52913
○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52992
○화물 포장,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	52993
○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	76390
○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	74212
○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(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)	381 (39009)
○폐기물 처리업	382
○폐수 처리업	37012

**붙임2****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**지식서비스업체(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)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※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	5821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전기 통신업	612
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정보서비스업	63
○연구개발업	70
○광고 대행업	7131
○옥외 및 전시 광고업	71391
○경영 컨설팅업	71531
○제품 디자인업	73202
○시각 디자인업	73203
○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	73209
○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	741
○보안 시스템 서비스업	7532
○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
### 붙임3

## 공장등록증 대체서류

#### 가. 기본 제출서류

공통사항		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	
제조업	공장 등록업체	공장등록증	
	공장 미등록업체	500㎡ 이하	건축물관리대장 (용도: 공장 또는 제조)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
		500㎡ 이상	신청불가
서비스업	사업장 사진 4장 및 관련 등록증(인허가증)		

#### 나. 대체 증빙서류

구분	증빙서류	비고
자동차정비업	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	
인쇄사	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·신고 허가서 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6항)	
양곡가공		
인삼제조		
사료제조		
비료생산		
도축업, 축산물가공업		
계량기 제조업		
물질제조		
유해화학물질		
가축분뇨재활용		
먹는샘물		
건강기능식품		
의지보조기구		
골재채취업		
건설기계사업		
자동차폐차업		
수산물가공업		